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17
----------	-------

발의연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윤준병 · 이정현 · 문대립
김용민 · 한병도 · 서영석
소병훈 · 이성윤 · 강준현
서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보상연금은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현행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등의 법률에서는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액 수준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64조의2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4조의2(재혼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특례) ①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유족보상연금액은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보상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과 방법, 비율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u>	<u><삭 제></u>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64조의2(재혼에 따른 유족보상 연금의 지급 특례) ①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유족보상연금액은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보상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과 방법, 비율 산정 등에 필요한</u>

	<u>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